

## 2018년도 온천종사자교육 통지(4차)

문서번호 : 온협18-331

2018. 10. 2

온천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·온천협회가 주관하는 2018년도 온천종사자교육을 다음과 같이 통지(4차)하며, 사이버교육이나 집합교육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**■ 교육내용**

- 시간 : 4시간(연1회)
- 과목 : 온천법(행안부)2시간, 온천운영(협회)1시간, 공중위생관리(지자체)1시간

**■ 사이버(온라인) 교육**

- 정회원에 한하여 이수 가능(2018. 6. 18 ~ 12. 15)
- 정회원 : 협회홈페이지에 회원등록하고,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온천종사자

**■ 집합교육 : 정회원이 아닌 온천종사자(다음 집합교육 중에서 택1)**

구분	일 시	세부장소	비고
1차	2018.05.23.(수)	대구문화예술회관	완료
2차	2018.06.20.(수)	광주 5.18 교육관 대강의실	완료
3차	2018.09.12.(수)	동래구청 대회의실	완료
4차	2018.10.26.(금)	한탄리버스파호텔 1층 세미나실(한탄강홀) [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태봉로 1799-22, 033)455-1234] ※ 2018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개막식 당일	
5차	2018.11.21.(수)	대전근현대사 전시관 2층 대회의실[(구)충남도청 회의실] [대전 중구 중앙로 101(선화동)]	예정
시간	집합교육 당일 14:00~18:00 [4시간]		
교육비	○ 교육비 30,000원 - 계좌입금 [신한은행 140-009-424040 (특)한국온천협회] - 계좌입금시는 사업체명으로 입금(개인명의 입금시는 협회로 통보) - 정회원은 교육비 면제 ※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(세금계산서 발행시 필요)		

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장



**온천법 제26조(온천종사자 교육)** ① 온천종사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온천종사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营业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교육책임자를 지정하고, 그 책임자로 하여금 온천종사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은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**온천법 제37조(과태료)** ①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온천종사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·군수가 부과·징수한다.